



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

1. 지정번호 : _____
2. 기 업 명 : _____
3. 대 표 자 : _____
4. 소 제 지 : _____
5. 핵심 뿌리기술 분야 또는 범위 : _____
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.

[재발급 사유] 지정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(최초 발급일 : 2017. 1. 11.)

2019년 10월 1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